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현 (외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재외공관 주재관에 대한 징계 사유 발생 시 원소속부처 복귀 등에 따라 징계 절차의 실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부처 간 의견 제시, 징계의결등 결과 통보 등 절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적정한 인사·징계 운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재외공관 주재관에 관한 비위 처리 시 외교부장관 및 원소속부처의 장관 처리 절차 및 협조 사항 마련(제16조 개정)

- 1) 외교부장관은 비위 사실 통보 시 징계 양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, 원소속부처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 징계의결 요구
- 2) 원소속부처의 장은 징계의결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, 외교부장관은 동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가능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재관이 원소속부처로 복귀한 때에는 원소속부처의 장에게 「공무원 징계령」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면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 양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, 원소속부처의 장은 해당 주재관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원소속부처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로부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, 외교부장관은 그 결과가 현저하게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나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원소속부처 복귀한 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 이후 원소속부처로 복귀한 주재관에 관하여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징계) ① 외교부장관은 「재외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> <신설>	제16조(징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재관이 원소속부처로 복귀한 때에는 원소속부처의 장에게 「공무원 징계령」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면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 양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, 원소속부처의 장은 해당 주재관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. ③ 원소속부처의 장은 관할 징계 위원회로부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, 외교부장관은 그 결과가

② 주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.	<u>현저하게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나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</u> 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 <u>부칙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원소속부처 복귀한 자에 관한 징계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령 시행 이후 원소속부처로 복귀한 주재관에 관하여 적용한다.</u>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외교부 인사기획관	
연 락 처	(02) 2100 - 7152